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86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박선원 · 최민희 · 전용기
노종면 · 신정훈 · 조정식
최기상 · 허 영 · 김남근
김병주 · 강준현 · 이훈기
허성무 · 박지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 제한을 받아왔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생활 불편을 겪어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새롭게 통합·이전할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등의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도입했으나,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는 등 군사시설 이전을 지원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과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국방 현대화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 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은 동등하게 교환함 (안 제6조)
- 다.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 가 지원하고,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기부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실투입비 이상이어야 하고 양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제외함(안 제7조)
- 라. 이전사업의 단계별 시행을 위해, 최종 합의각서 체결 이전 조성이 완료된 대체시설에 대해 기부 대 양여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함 (안 제8조).

마.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안 제11조).

바.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인가·허가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고 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등의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함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및 인가·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안 제17조부터 안 제27조까지).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활용 사업,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 현대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기지”라 한다)”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을 말한다.
2. “군사기지 이전사업”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기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를 통합·재배치 또는 압축·재배치하는 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사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

6.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중전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7.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8.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중전부지 활용사업”이란 이전사업이 완료된 중전부지를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이전사업의 시행자) ① 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이전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그 밖에 이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종전부지 활용사업에 관한 계획에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이 포함된 경우로 국방부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활용사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이전사업은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종전부지 활용사업에 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

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은 동등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②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 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대체시설 가액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체시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야 한다.

④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부 및 양여 재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부재산의 가액은 토지 등 매입과 대체시설의 공사비, 부대비, 자본비용 등 실제 투입된 모든 금액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하되, 사업시행자가 실제 투입한 비용 이상이어야 하며 양여재산의 가액은 종전부지 활용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양여재산의 감정평가 대상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장비 등 종전부지에 현존하는 물건이며, 그 중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양여재산 평가 시 제외한다.

제8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최초 합의각서 체결 이후 필요 시 사업구역을 분할하여 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분할된 이전사업이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기부재산 가액과 양여재산 가액을 평가 후 기부재산 가액범위에서 종전부지를 양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사업시행자는 최초 합의각서에 포함된 모든 이전사업이 완료된 경우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최종 합의각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된 이전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토양오염 처리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을 정화하여야 하며, 발생한 실투입 비용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예산으로 지급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를 위하여 군사시설 철거가 필요할 경우 기부 대 양여 완료 전이라도 대체시설 사용과 철거를 함께 승인하여야 한다.

④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한다.

제10조(이전사업 보고) 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1.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2.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례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

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지원계획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약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협의가 있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인가·허가등의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13조(조세 감면 및 부담금 등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안에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장을 이전하여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점용료·사용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이전사업, 지원사업,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 법률

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 인가·허가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4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제15조(계약방법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장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지원

제17조(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전사업이 완료된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군 대체시설을 고밀도로 압축·재배치하기 위한 경우 이전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종전부지 활용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의무 이행을 면제한다.

④ 종전부지 활용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공공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의 조성·공급 및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설·공급을 면제한다.

제18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특례) 종전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1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3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내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전 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 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종전 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가·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심

사를 면제한다.

②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5조의2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을 면제한다.

③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타당성, 지방의회의결, 출자한도 등의 적용을 면제한다.

제2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준용규정) 종전부지 활용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